

제2장 실험동물실의 이용

1.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서 인정하는 실험동물 시설에만 실험동물의 사육이 가능하며, 기타 지역에서는 실험동물을 구입하여 동물실험을 수행할 수 없다. 단, 실험동물실에서 사육 후 동물실험을 위한 반출은 예외이다.
2. 동물실험 실시자(이하 '실험자' 한다)는 "실험동물실 출입 등록/이용 신청서"(붙임1)를 작성하여 실험동물실 사육담당자(이하 "관리자"라 한다)에게 제출하고 출입허가를 받는다. 최초 출입신청자에 대해서는 실험동물실 이용자 교육을 받은 후 출입 허가를 받는다. 관리자는 "동물실험실 이용자 대장"(붙임2)을 작성·관리한다. **단, 동물실험실 이용자 교육 프로그램은 별도로 정한다.**
3. "실험동물실 출입 등록/이용 신청서"의 만료일은 통상 당해년도 12월 31일까지이며, 상황이 부득이 하다고 판단 할 경우 예외적으로 만료일은 관리자가 설정할 수 있다.
4. 실험자는 이용자 교육 이수 후 "동물실험계획서"(위원회홈페이지 또는 붙임3)를 작성하여 관리자에게 제출하고, 동물실험 승인 신청에 대한 절차를 거친다.
5. 실험동물실 내부 이용에 대한 절차서는 실험동물실 출입 SOP와 출입수칙에 따라 이용하며, 관리자는 이용절차와 주의사항을 상세히 교육시킨다.
6. 관리자는 실험동물실 이용자 현황에 교육이수 여부를 기재하여 통합관리 하며, 동물실험에 관한 문의사항은 홈페이지와 온라인을 통해 안내할 수 있다.
7. 실험동물실 신규 이용자 등록 및 출입 기록은 중앙출입관리시스템(스마트카드)에서 등록하거나 열람할 수 있으며, 카드 신규 등록 전에 사육담당자가 최종 판단하여 출입관리 담당 직원에게 신규 등록을 신청한다.
8. 실험동물실 이용자를 제외한 일회성 방문자 또는 업체관계자에 대해서는 출입 등록을 허가하지 않으며, 출입을 희망할 경우에는 관련 SOP 에 따라 출입할 수 있다. 단, 견학(방문) 출입은 관련 SOP 에 따른다.
9. 외부기관과 공동연구 등의 목적으로 일정기간 이상 교내에서 상주해 동물실험실을 출입 희망할 경우에는 동물실험실 이용 SOP 에 따라 신규 이용자로 등록하여 출입할 수 있다.